



원격수업에 관한 운영 규정

규정 번호	2-4-27
제정일자	2021. 10. 1.
개정일자	2024.6.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작용적인 원격통신을 활용하여 교수자의 강의와 피드백, 행정적인 지원과 확인 등을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구성)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3.30., 2023.7.6., 2023.12.7., 2024.3.20., 2024.6.20.>

제4조(업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2023.7.6., 2023.12.7., 2024.3.20., 2024.6.20.>

1. <삭제 2024.6.20.>
2. <삭제 2024.6.20.>
3. <삭제 2024.6.20.>
4. <삭제 2024.6.20.>
5. <삭제 2024.6.20.>
6. <삭제 2024.6.20.>

제5조(위원회) <삭제 2024.6.2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원격수업 운영

제7조(교육과정) 원격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개설) 원격수업 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은 매년 초 학과신청과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2023. 7. 6. 개정>
2.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개설한다.
3. 원격수업은 이론 수업에 대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추가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할 수 있다.<2023.12.7.개정>
4. 원격수업은 정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 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다.
 5.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최대 50%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허가원을 제출하여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2023.12.7., 2024.2.22. 개정>

제9조(강좌운영)

1. 원격수업은 본 대학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격수업의 강좌운영은 오프라인(offline) 수업도 병행할 수 있다.<2023.7.6., 2023.12.7., 2024.2.22. 개정>
3. 원격수업 담당교수의 인정 수업일수는 1일이며, 개설된 시수 모두 인정한다. <2023.7.6. 개정>
4. 원격수업의 교양 교과목 강좌 당 학생 수는 6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하며, 필요시 총장의 허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3.7.6., 2024.2.22. 개정>
5. <2021. 12. 23. 신설> <2022. 9. 19. 개정> <2023. 2. 23. 삭제>
6. 원격수업 담당 교수는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수강 학생들에게 강좌 운영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 7. 6. 신설>
7. 수업 콘텐츠는 담당 교수가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 7. 6. 신설>

제10조(수강신청) 본 대학교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2023.12.7. 개정>

제11조(학점당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수업시간) ① 차시 당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미만으로 제작 할 수 있다.
- ② <2024.2.22. 삭제>

- 제13조(출석) ① 출석 점수 산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2023.12.7., 2024.2.22. 개정>
- ② 각 주차의 강좌를 차시 당 70%이상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한다.<2023.12.7., 2024.2.22. 개정>
- ③ 담당교수는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출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2023.12.7. 개정>

제14조(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2023.12.7. 개정>

- 제15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 규정에 따른다. <2024.2.22. 개정>
- ② 성적평가 기간 및 성적전표 제출은 일반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강의평가) 강의평가는 매 학기 일반과정의 강의평가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제17조(콘텐츠개발) ① 콘텐츠 개발은 담당 교수 또는 외주 용역에 의해 개발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 ③ 개발이 완료된 교과목의 저작권은 본 대학으로 귀속한다.

제18조(영상운영기간) 원격교육 콘텐츠 운영은 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기간 경과 콘텐츠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2021. 12. 23. 개정>

제19조(시설 및 설비)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 ·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재정운영 및 기타

제20조(재정) 재정은 신안산대학교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인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3조(구성), 제4조(업무), 제5조(위원회), 제8조(개설), 제9조(강좌운영), 제10조(수강신청), 제13조(출석), 제14조(시험)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8조(개설), 제9조(강좌운영), 제12조(수업시간), 제13조(출석), 제15조(성적평가)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